

2024년 건축·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※ 적용시기 : 2024. 1. 1. 기초금액 발표분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[기타경비]		공사규모 (추정가격)	[일반관리비]		[이윤]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	(재+노+경) x 율			(직접공사비) x 율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			
	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	건축, 산업설비	전문- 전기·통신- 소방·기타		(노+경+임) x 율		종합건설업		전문건설업	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2	12.2	5.8	5.8	5억 미만	6.0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안전관리비 대상액 ^{하)}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			
	7~12개월 (365일)	12.2	12.2	5.7	5.7													건축공사	0.07	비계·구조물해체공사	0.68	
	13~36개월 (1095일)	12.0	12.0	6.0	6.0													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7	11.7	5.8	5.8																	
50억 -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7	11.7	5.8	5.8	5억 - 30억 미만	5.5	5.0	15.0	산업·설비공사	0.16	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, 철근콘크리트공사, 가스시설공사(1종)	0.32	5억 미만	일반건설공사(갑)	2.93						
	7~12개월 (365일)	11.7	11.7	5.8	5.8													일반건설공사(을)	3.09			
	13~36개월 (1095일)	11.5	11.5	6.1	6.1													중건설공사	3.43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2	11.2	5.9	5.9													철도·궤도신설공사	2.45			
300억 -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5	11.5	5.9	5.9	50억 - 100억 미만	5.5	12.0					5억 ~ 50억 미만		일반건설공사(갑)	1.86	5,349					
	7~12개월 (365일)	11.5	11.5	5.8	5.8													일반건설공사(을)	1.99	5,499		
	13~36개월 (1095일)	11.3	11.3	6.1	6.1													중건설공사	2.35	5,400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0	11.0	5.9	5.9												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57	4,411		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1.1	11.1	5.6	5.6	300억 - 1000억 미만	5.0	4.5	10.0						50억 이상	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	일반건설공사(갑)	1.20	3,250			
	7~12개월 (365일)	11.1	11.1	5.6	5.6															일반건설공사(을)	1.97	
	13~36개월 (1095일)	10.9	10.9	5.9	5.9															중건설공사	2.10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0.5	10.5	5.6	5.6														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66	
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관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제급과공과, 도자언하						* 적용제외: 문화재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																
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						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를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															
[산재보험료]						[환경보전비]		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					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							
(노) x 3.56			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3-620호(2023. 12. 22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구분		요율		공사규모(추정가격)		요율		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								
						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		0.9		50억 미만		0.081										
[고용보험료]						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		0.4		50억 이상 - 100억 미만		0.080		-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,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,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								
						지하철		0.5	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		0.075										
(노) x 율						철도		1.5		300억 이상 중상·중형제(토목 및 산업설비)		0.071		* 건설업의 분류								
						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		0.5		300억 이상 중상·중형제(건축)		0.068										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				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로 방지막 설치		1.8		터전·대안공사		0.084		- [일반건설공사(갑)] 건축건설, 교량건설, 도로신설, 철도·궤도의 보수복구, 기설로면에 레일 부설하는 공사								
				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로 방지막 미설치		0.8														
[1등급] 1200억 이상						담		1.1		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문화재수리공사 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		[공사이행보증수수료]		- [일반건설공사(을)] 기계장치공사, 석도건설공사								
						7등급 미만		1.01					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 * 중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)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사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1.)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택지개발		0.6		70억 미만		[직공비x0.0141%]x공기(년)		- [중건설공사] 고제방(높이20m이상)의 제방, 방파제, 안벽, 수력발전시설, 터널(지하10m복개식 지하철도, 지하도,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) 신설공사								
						기타 토목(하천 등)		0.8		70억이상~120억미만		[1백만원원+(직공비-75억)x0.0102%]x공기(년)										
[건강보험료]						주택(재개발, 재건축)		0.7		120억이상~250억미만		[1.5백만원원+(직공비-130억)x0.0077%]x공기(년)		- [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] 철도, 궤도시설(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) 및 그에 따른 역사, 과선교, 승전선로								
						주택(신축)		0.3		250억이상~500억미만		[2.4백만원원+(직공비-250억)x0.0063%]x공기(년)										
[노인장기요양보험료]						주택 외 건축		0.5		500억 이상		[4백만원원+(직공비-500억)x0.0050%]x공기(년)		- [특수 및 기타건설공사(단독발주에 한함)] 준설, 조경(조경관련 전문 포함), 택지조성(경지정리포함),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(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: 일반건설(갑) 적용)								
						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		0.3														
[연금보험료]						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				* "지방계약법 시행령" 제51조제4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6장) 대항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9장) 기술에너지 입찰에 의한 계약		*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(노동부 고시 제2022-43호, 2022.6.2.)										
						. 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·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표준 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																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. 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훈련비 등 설계사 산출에 관련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산				□ 수의계약 시 1차 낙찰율, ()은 2000.7.31.이전 (「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」 제9조) -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 87.75%(85%) - 추정가격10억~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 - 추정가격50억~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 85.5%(80%)												
						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																
[퇴직공제부금비]						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 수리공사																
						(직노) x 2.3																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																						